

#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884
----------	-----

2019년 9월 6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년 8월 7일 이병도 의원의 16명
2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3일
3. 상정일자 :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19년 8월 30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 (이병도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은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, 한부모·조손·다문화 가정의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으로 규정되어 있어 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 효과를 야기하고 있음.
- 이에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

으로써 낙인감과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는 한편, 생활환경 및 가정 상황 등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우선이용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선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하고자 함.

- 또한, 노후화된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.(안 제5조)
-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제4호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## 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# 1 개정안의 취지

- 본 조례안은 우선이용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규정하여, 센터 이용아동의 사회적 낙인감과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목적대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·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된다 하겠음.
-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아동센터의 등의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센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#### 2 주요사항 검토

##### □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(안 제5조)

- 개정안(안 제5조)은 현행 조례에서 센터 이용대상을 18세 미만인 사람 중 ▲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▲한부모·조손·다문화 가정의 아동 ▲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한정하던 것을, 원칙적으로 ‘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’으로 확대하는 내용임.
- 집행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“지역 사회 내 모든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돌봄취약아동의 경우

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”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,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-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사회 내 모든 아동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돌봄취약아동의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, 우선 이용대상 아동을 ‘부모의 상황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’으로 규정하여 개정 전과 비교할 때 열거적 규정에서 예시적 규정으로 변경됨
-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대상 아동 비율(일반아동의 경우 20% 범위 내 등록가능)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건복지부 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,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지침을 조례 상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, 개정 전 규정에서도 이용대상 아동 비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며,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므로, 조례 개정안의 내용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

[2019. 8. 1. 법률지원담당관]

- 또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용아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용아동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<sup>1)</sup>, 우선 이용대상 아동에 관한

사항을 개정하더라도 선정기준이 불명확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.

- 다만 2004년 법제화 이전부터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방과후초등돌봄 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위시하여 아동에게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현재 서울시정의 지향하는 바이나, 이 과정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와의 이용아동의 중복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 감소로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오히려 돌봄이 꼭 필요한 아동이 배제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임<sup>2)</sup>.

#### □ 센터 환경개선 등 비용 지원 (안 제7조제4호 신설)

- 개정안(안 제7조)에서는 센터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바, 이는 현행 조문인 “사업비의 지원”을 “비용의 지원”으로 하여 그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- 또한 개정안(안 제7조제4호)은 같은 조 각 호에서 규정된 센터 비용 지원 사항에 “센터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”을 새로운 호로 신설하였는데, 이는 「아동복지법」<sup>3)</sup>에서 시장에게 “아동

1) 보건복지부, 「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」, pp.39-49.

2) 이는 크림 스킴(Cream Skimming)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, 즉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영업 활동을 하며 수익성 있는 부분만 골라서 취하는 행태로 이른 바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서로 유리한 시장만 선택적으로 진입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임.

3) 「아동복지법」 제59조(비용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3. 27., 2017. 10. 24.>

1.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

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”등을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바,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-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도 노후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매칭으로 2019년 신규 추진 중인 “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” 사업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동의한 바 있음.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사업비의 지원)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센터 사업비 2.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 3.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4.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</p>	<p>제7조(비용의 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센터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

- 2.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
- 3. 아동복지사업의 지도, 감독,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
- 4. 삭제 <2016. 3. 22.>
- 4의2.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
- 4의3.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
- 5.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
- 6.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
- 7.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
- 8.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·육성에 필요한 비용

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### 3 종합 검토의견

-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의 보호와 복지, 교육을 지원하는 아동복지기관인 바, 개정안은 보호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신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 아동의 사회적 돌봄서비스 필요여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용아동을 위해 문턱을 낮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.
-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, 지역아동센터 운영과정에서 취약계층 아동이 크림 스키밍(Cream Skimming) 현상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【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11명, 전원 찬성】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